성주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성 주 군수

2. 제정이유

□「담배사업법 시행규칙」이 개정(2010. 3. 3 일부개정, 2010. 7. 1시행)됨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(안 제4조)
○ 사실조사 의뢰에 따른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5조)
○ 관련기관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○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7조)
○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)

4. 관계법령

○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7조의 3

5. 검토보고

□ **본 조례안은**「담배사업법 시행규칙」이 개정(2010. 3. 3 일부개정, 2010. 7. 1 시행)됨에 따라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규정의 의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 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,

○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법률우위의 원칙에 의거 법령에 위배 되지 않고,「자치입법 입안 심사 기준」에 합당하므로 **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**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